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86
----------	-----

제출연월일 : 2022. 11. 10.

제 출 자 :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항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단체(지방체육회)의 운영 지원을 조례로 명시 필요
- 법률 개정에 따른 생활체육진흥 관련 용어 재정비

2. 주요내용

가. 지방체육단체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 1) 대구광역시서구생활체육회 → 대구광역시서구체육회 등

나. 지방체육단체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 1)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함을 명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항 반영)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2. 9. 30. ~ 10. 20.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 아님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5)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6)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의결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를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로, “건강증진”을 “건강 증진”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조례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1. “생활체육”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 서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를 말한다.
3. “체육동호인조직”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서 같은 생활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7조를 각각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3조로 한다.

제4조(중전의 제3조) 중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을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라”로, “체력증진”을 “체력 증진”으로, “기본적인 생활체육 진흥사업 운영계획”을 “체육 진흥 계획”으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 제1항 중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을 “구민”으로,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을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생활체육회”를 “생활체육단체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③ 구청장은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로, “생활체육단체 등”을 “생활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활체육단체 등은”을 “생활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은”으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 중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를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로 한다.

제8조 중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u>구민 건강증진</u>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활체육”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p> <p>2. “생활체육단체”란 대구광역시 서구생활체육회 및 종목별 연합회를 말한다.</p> <p>3. “체육동호인조직”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서 같은 생활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의 모임을 말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 ----- ----- ----- ---<u>구민건강 증진</u>-----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조례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p> <p>1. “생활체육”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p> <p>2. “생활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 서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를 말한다.</p>

제3조(진흥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체육 진흥사업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의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5. 생활체육회 운영 및 체육진흥 사업에 필요한 경비

<신설>

3. “체육동호인조직”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서 같은 생활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 체력 증진----- 체육 진흥 계획-----
-----.

제5조(경비의 지원) ① -----
구민-----

----- 범위에서 보조금-----
-----.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단체의 -----

③ 구청장은 체육회에 예산의 범

제5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생활체육단체 등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활체육단체 등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서구의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방법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생략)

제8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 ① -----
----- 위
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
----- 생활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

② -----
----- 생활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은 -----

-----.

제7조(포상) -----

-----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제3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준용) -----

-----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2. 8. 11.] [법률 제18808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 2. 4., 2020. 12. 8.>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2022. 2. 3.>